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362
----------	-------

발의연월일 : 2025. 8. 26.

발 의 자 : 최은석 · 구자근 · 김상훈
진종오 · 추경호 · 김기현
이상휘 · 김승수 · 유용원
이인선 · 김선교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토지에 가스배관시설을 설치하려면 가스배관시설의 설치방법 및 존속기간 등에 대하여 미리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그 공익성에도 불구하고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도시가스를 적시에 공급하지 못하는 지역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그 소유의 토지를 도로 등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에도 협의 불성립으로 도시가스 공급이 지연되어 공익적 손실이 크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가스배관시설을 설치하려는 토지가 장기간 공공의 통행을 위해 사실상 제공된 경우로서, 토지 소유자가 이를 자발적으로 허용하여 왔고 성실한 협의 노력이 이루어졌음에도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해당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2조).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2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에”를 “제2항 및 제3항에”로, “등 보상에 관한”을 “등 구체적인”으로 한다.

③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1항 후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1. 가스배관시설을 설치하려는 토지가 도로 등 일반 공중의 통행 등 공공용도로 사실상 제공된 토지로서 토지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그 이용을 허용하여 온 경우일 것
2.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실히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당한 기간 내에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것
3. 해당 토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도시가스 공급에 현저한 곤란이나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는 등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일 것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과 공공의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공익이 사익보다 큰 경우에 허가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2조의2(다른 자의 토지 사용) ① · ② (생 략) <u><신 설></u>	제42조의2(다른 자의 토지 사용)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1항 후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u> <u>1. 가스배관시설을 설치하려는 토지가 도로 등 일반 공중의 통행 등 공공용도로 사실상 제공된 토지로서 토지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그 이용을 허용하여 온 경우일 것</u> <u>2.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실히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당한 기간 내에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것</u> <u>3. 해당 토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도시가스 공급에 현저한 곤란이나 과도한 비용이 발생</u>

